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2월 28일 (제 257 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07년 2월 23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안연월일 : 2007년 2월 23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안이유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농산물” 정의 신설(안 제2조)
-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대행(안 제3조)
- 융자금의 이율 인하 : 연 2% → 연 1.5퍼센트
단,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연 1퍼센트 (안 제8조제2항)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을 하향조정 : 6%이상 → 1퍼센트 이상 (안 제10조)
-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율 인하 : 연 2% → 연 1.5퍼센트(부칙 제2항)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재정법 제9조

조 례 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및 「수산업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충청북도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6. “차세대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귀농인”이라 함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 1년 이상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제2항중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차세대농업인, 귀농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운용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②융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중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되어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u>〈신 설〉</u></p> <p>1. “농·어업인”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 2조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p> <p>2. (생 략)</p> <p>3. (생 략)</p> <p>4. (생 략) 가.~나.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u>농·어업</u>”이라함은 「<u>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u> 규정에 의한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및 「<u>수산업법</u>」 제 2조제 8호 규정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p> <p>2. “<u>농·어업인</u>”이라함은 충청북도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향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6. <u>“차세대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u></p>
<p><u><신설></u></p>	<p>7. <u>“귀농인”이라 함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 1년 이상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p>
<p><u><신설></u></p>	<p>8. <u>“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u></p>
<p>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①(생략)</p> <p>②심의위원회는 <u>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u>에서 대행한다.</p> <p>③ (생략)</p> <p>1.~3. (생략)</p>	<p>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 <u>충청북도 농정심의회</u>----- 대행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 (생략)</p> <p>②(생략)</p> <p>1. 시설자금은 <u>농·어업인</u>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p> <p>2. <u>운영자금</u>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단서생략)</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시설자금은 <u>농·어업인, 차세대농업인, 귀농인</u>은 5천만원 이내-----.</p> <p>2. <u>운영자금</u> ----- ----- (단서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생략)</p> <p>②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다.</p> <p>③(생략)</p> <p><u><신설></u></p> <p><u>제9조(생략)</u></p> <p><u>제10조(세입,세출) ①(생략)</u></p> <p>1. 일반회계 전입금(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p> <p>2.~4. (생략)</p> <p><u>제11조(생략)</u></p> <p><u>제12조(생략)</u></p> <p><u>제13조(생략)</u></p>	<p>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현행과 같음)</p> <p>②-----연 1.5퍼센트로 하되,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은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p> <p>③(현행과 같음)</p> <p><u>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p><u>제10조(현행과 같음)</u></p> <p><u>제11조(세입,세출) ①(현행과 같음)</u></p> <p>1. -----(------ 순세계 잉여금의 1퍼센트 이상)</p> <p>2.~4. (현행과 같음)</p> <p><u>제12조(현행과 같음)</u></p> <p><u>제13조(현행과 같음)</u></p> <p><u>제14조(현행과 같음)</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